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9

발의연월일: 2020. 6. 8.

발 의 자:도종환·김영주·박 정

김철민 • 이정문 • 안민석

기동민 • 조승래 • 임호선

김원이 • 변재일 • 이원택

김병기 · 이상헌 · 정정순

민홍철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 및축제 등(이하 "전시회등"이라 함)과 관련된 산업을 문화산업의 일부로 규정하여, 박물관, 전시관 등 전시공간에서 전시물을 기획·설계·제작·설치하는 전시연출산업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드러나지 않음.

박물관 등의 전시회에서 전시물을 기획·설계·제작·설치하는 전시연출은 전시의 콘텐츠만큼이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전시연출산업은 설계 대가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저가 입찰이 일상화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문화산업으로서의 지위를 보다 분명히 규율할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산업의 범위에 문화상품 또는 공공문화콘텐츠 대상의 전

시회등과 그 전시물의 연출을 위한 설계·제작·설치와 관련된 산업까지 포함하는 한편, 공공문화콘텐츠의 개념에도 '전시'를 포함하여, 문화산업으로서의 전시연출의 개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법률 제 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차목 본문 중 "문화상품을"을 "문화상품 또는 공공문화콘텐츠를"로, "산업"을 "산업 및 그 전시물 등의 연출을 위한 기획・설계・제작・설치와 관련된 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보유・제작"을 "보유・제작・전시"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1
기획・개발・제작・생산・유	
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	
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
가. ~ 자. (생 략)	가. ~ 자. (현행과 같음)
차. <u>문화상품을</u> 대상으로 하	차. 문화상품 또는 공공문화
는 전시회・박람회・견본	콘텐츠를
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u>산업</u> . 다만, 「전시산업발	
전법」 제2조제2호의 전시	산업 및 그 전시물 등의
회・박람회・견본시장과	연출을 위한 기획・설계・
관련된 산업은 제외한다.	제작・설치와 관련된 산업.
카. (생 략)	카. (현행과 같음)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8. "공공문화콘텐츠"란 「공공	8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
기관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립
박물관, 공립 박물관, 국립 미
술관, 공립 미술관 등에서 보
유・제작 또는 관리하고 있는
문화콘텐츠를 말한다.

9. ~ 21. (생 략)

<u>보</u> 유·제작·전시
-
유·제작·전시
<u>ㅠ・세석・선시</u>
 .
9 ~ 21 (혀해과 간을)